

## 간호교육인증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내규

제정 : 2025.03.01

제1조(목적) 본 내규는 간호학과(이하 “학과”라 한다) 간호교육인증평가의 자체평가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실시하는 간호교육인증 평가에 적용한다.

제3조(평가영역) 평가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비전과 운영체계
2. 교육과정
3. 학생
4. 교수
5. 시설과 설비
6. 교육성과

제4조(구성) ① 학과는 간호교육인증평가의 총괄적 업무수행을 위해 자체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

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체평가위원장과 평가영역장 6인 등 7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제3조의 영역을 주관하는 평가영역장과 약간의 평가영역 별 위원을 둔다.

④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5조(기능)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자체평가에 대한 기획과 평가준비 및 기본방향과 전략수립
2.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및 보고
3. 간호교육인증평가 주요지표 관리 및 향상을 위한 정책건의
4. 자체평가 예산확보

제6조(평가실시) ① 위원회는 매년 간호교육인증평가 자체평가를 실시한다.

② 위원회는 자체평가보고서 결과를 관련부서를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7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운영규정)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